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8. 4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송달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도O곤	89.12.29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결정	-구직활동의무를 2회이상 미이행하여 지속적인 연 락과 출석통지에도 불구 미방문 및 연락두절	①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 지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-패문부재	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 49-10(진평동) 스카이크트 305호 (이하여백)

4. 공고기간: 2026. 8. 4. ~ 2026. 8. 18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구미고용복지+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현령(Tel. 054-440-334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